경기도 공고 제2021-5083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변경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	당초 처분사유	근거법령 및 변경처분사유
			정정 전	정정 후		
㈜티엘건설 (정OO)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63번길 98(오목천동)	토목건축공사업 10-0495	영업정지 5개월 (2020.9.22.~ 2021.2.21.)	영업정지 4개월 15일 (2020.9.22.~ 2021.2.6.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(기술인력, 자본금, 사무실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